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경 인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의정부우체국장

(경유)

제목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통보

1. 관련

- 가.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 【위탁업무의 취급원칙】
- 나.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2조 【관계규정의 준수 의무】
- 다.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20조 【양도 및 위임금지】
- 라.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25조 【위탁계약의 해지】
- 마. 감사관-2988(2015. 10. 26.) 【기강감사 결과 우편취급국 지적사항 통보】
- 바. 우정계획과-7116(2015. 11. 19.) 【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】
- 사. 우정계획과-7779(2015. 12. 16.) 【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처분(예정)에 따른 청문 결과】

2. 우표류 판매를 외부기관에 임의위탁하는 등 우표류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귀국 소속 아래 우편취급국에 대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하니 후속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위탁계약 해지 및 우편취급국 폐국

1) 계약해지(폐국) 대상국

취급국 (총괄국)	수탁자	업무 구분	개국일	건물 소유	위 치	인근국간 거 리
의정부녹양동 (의정부)	이정숙	필수	'87.12.30	임차	의정부 녹양로34번길 6	가능동 0.7km, 의정부2동 1.8km

2) 해지 사유 : 우표류 판매 임의위탁 등 업무 부적정

3) 해지 및 폐국일 : '16. 1. 1.(금) 【'15. 12. 31.(목) 업무종료후】

나. 총괄국 조치사항

- 1) 비품(전산장비 포함), 각종 장표류, 증서류 등 회수 보관
- 2) 관급품(직인, 인장류, 고무인, 일부인류, 간판류) 회수 보관
- 3) 업무위탁증서 및 계약서 회수하여 폐기
- 4) 우편물처리, 세입금수납 등 관리감독 철저 및 마감감사 실시
- 5) 폐국에 따른 인근국 이용안내문 게시
- 6) 이용고객 및 계약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홍보
- 7) 우편물 운송량 조정 등

붙임 :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고시문 1부. 끝.

경인지방우정청장



주무관

최승일

우정계획과장

송준현

우정사업국장

조병호

청장

12/16

백기훈

협조자

시행 우정계획과-7807 (2015.12.16.) 접수 ()

☎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-55 경인지방우정청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>
전화 [\(031\)8014-3116](tel:03180143116) / 전송 (031)8014-3119 / 010000335@koreapost.go.kr / 비공개(6)